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0일, 김용태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6.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 7. 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9.22.)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0차 교육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용태 의원)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기준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학교 주변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 당시 피해 학생에 대한 경찰 수색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현행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8)¹⁾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²⁾의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³⁾, 학교의 장이 학교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관리하고 있음⁴⁾.

최근 대전 초등학교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⁵⁾ 신고 당시 피해 학생에 대한 경찰 수색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등 학교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학교시설 CCTV 설치 현황> 참고, 10페이지

5) 2025.2.10.(월) 16:30~017:30경, 늘봄학교(방과후 돌봄) 참여 학생 학교 내 피살사건 발생

내 안전 사각지대의 관리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특히 학교 내 CCTV 통합관제를 통한 학교 안전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로 안전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에 관하여는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7)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 안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⁷⁾에서 관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연계하여 통합관제하고 있음.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365,875대인데, 그 중 8.3%에 해당되는 30,221대가 통합관제 중이고, 대부분 학교담장, 교문, 주차장 등 학교 외부 CCTV에 한정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학교시설 CCTV 설치 및 통합관제 현황>

(2025.2.11.기준)

학교급	CCTV 설치 수(대)	통합관제 CCTV 수(대)	통합관제 CCTV 비율(%)
초	131,119	25,872	19.7
중	105,925	3,280	3.1
고	122,139	776	0.6
특	6,692	293	4.4
소계	365,875	30,221	8.3

(자료: 교육부)

학교 내 CCTV의 통합관제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사회적 협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통합관제 확대 시 이에 필요한 시설구축 및 관제인력 등의 재정 소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2025.6월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개 시도에서 통합관제 운영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의원, 조정훈 의원, 김문수 의원, 김용태 의원, 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